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5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59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2091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홍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10.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2091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9.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9,987,3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987,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① 제5쪽 제1~2행의 “적극재산으로서는 당시 시세가 28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를 “적극재산으로서는 당시 시세가 28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E은행에 대한 10,562,999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로, ② 제5쪽 제6행의 “을나 제1 내지 6호증”을 “을나 제1 내지 7호증”으로, ③ 제6쪽 제19행의 “유일한 자산인”을

“거의 유일한 자산인”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조정환, 판사 오승이

별지